

불자 세상보기



이윤호 변호학박사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

최근 미국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 시에 위치한 엠파뉴엘 흑인 교회에 대한 백인 청년의 총기난사 사건이 전 국민과 사회를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게 하였다. 비단 미국사회에서 증오 범죄가 이번 사건만은 아니었지만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그로 인한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형태의 소위 '묻지마 범죄'를 비롯한 증오범죄라고 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이에 종교, 정치, 사회 일각에서는 이들 갈등과 증오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소위 '증오범죄방지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무릇 증오범죄는 타인에게 종교, 인종, 문화, 이념, 국적, 성별, 성적 지향과 정체성,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피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증오범죄는 희열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지키기 위하여, 집단과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KKK와 같이 사명감으로 저지르는 증오범죄 등 다양한 동기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무지와 오해로 인한 편견의 소산인 경우가 많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에서도 이러한 증오범죄를 해결하고자 증오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증오방지법'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당연히 사회와 시민에게 끼친 해악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아말로 사회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증오범죄방지법(Hate Crime Act)을 제정했던 미국은 지난 2009년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로 인한 증오 외에 성적 정체성과 정신적, 신체적 장애까지도 차별과 학대의 금지 이유에 포함시켜 증오범죄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는 편견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유형의 증오로 인한 인권의 침해나

훼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소위 '탈리오의 법칙'은 어찌면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사법정의 실현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파의 보복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성숙한 시민사회의 참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완전한 사법정의를 용서와 화해로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번 미국 흑인교회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보여준 용기가 바로 그것이다. 가족들은 범인을 용서하고 비난하고 응보를 요구하기보다, 용서하며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라'고 분노보다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자 범인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재판의 현상이 마치 화합과 치유의 증언 장으로 보이기에 이르렀다.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였던 오바마대통령도 급기야 희생자 가족들의 용서와 화해의 손짓을 보고 '비극 속에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났다'고 칭송하였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보편적 인권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재소자에게도 자유의 박탈 외에는 한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적용되

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법이 징벌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예부터 전해오는 것처럼, 우리는 죄는 미워해도 그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는 바로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지 말고 다만 선행과 악행만 구별하여 공정하게 상벌하자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 범인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만이 해결책도 아니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척하지 않도록 가치와 인식을 바로잡는 교육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부처님께서 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분별조차 하지 말 것을 가르치심을 본받더라도 우리에게도 차별과 배척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인식의 함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오래 전 여의도 광장의 유일 인파 사이로 택시로 돌진하여 어린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범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했던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날개 짓이 있지 않았던가.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청규, 위로부터 '술선수범'이 우선

조계종이 새로운 청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와 청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로운 청규의 필요성과 청규 제정 시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가 모아졌다. 기존 청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보아 새로운 청규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로 제정되는 청규는 승가를 바탕으로 한 '간략한 실천원칙'이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청규를 법제화하는 방안, 승가 교육을 통한 청규의 정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교육원은 청규 관련 교재를 만들고 올해 하반기부터 승가대학에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몇가지 의문점이 든다. 승가의 계율은 율장에 나와있는 것이고, 청규는 시대에 맞게 지켜야 할 사항을 별도로 만들어 지

키는 단체 규약과 같은 것이다. 파편화되는 시대에 개인 문제를 일일이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법제화해서 수행자 개개인을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다. 2010년 선원수좌회가 발간한 '조계종 선원청규'와 2013년 종단 쇄신위원회가 성안한 '승가청규'는 내용적인 한계도 있지만, 현재 종단이 청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의문도 든다. 1년에도 수시로 갈등이 빚어지는 주지 선출에 문제가 수행자 개개인의 일탈은 단순히 청규가 없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 발제자인 금강 스님의 "종단의 부와 권력은 상위 5%의 상층집단에 집중되었다. 청규의 정착은 위에서부터의 계몽과 교육, 모범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은 각골명심(刻骨銘心)해야 한다. 청규에 대한 공부해 해야 하는 사람은 학인뿐만 아니라 승가 전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조계종 종회, 책임과 의무 방기말라

조계종 중앙종회는 세속으로 따지면 입법과 비판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에 해당되는 기구다. 하지만 6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려 오후 3시에 폐회한 조계종 중앙종회 제202차 임시회는 종헌과 종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종회'였다고는 하지만 입법과 비판·감시라는 책임과 의무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회기(會期)였다. 이날 회의에서 종법 개정안으로 총리법 등 5개 법안이 올라왔지만 사찰문화재보존관리법 1개만 통과됐다. 나머지 법안들은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2건 이월, 2건은 철회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인사말에서 잘 살피 주길 당부한 직영사찰법은 정작 회의에서는 여당적인 불교광장 소속 스님이 "속의해 3월에 다루지는 총무원장 스님의 의사가 있었다"고 집행부를 체근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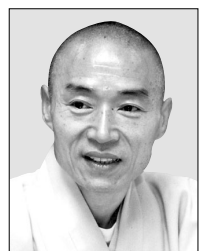
중앙종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비판·감시 기능도 마찬가지다. 집행부 견제가 아닌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는 데 바빴다. 신상발언을 통해 종책모임, 의원 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작 종책집의는 서면으로 대체해 '번개불에 콩을 볶듯' 처리해 버렸다. '원사이드' 형식의 16대 중앙종회가 출범 당시 제기된 '비판 기능 상실'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적인 삼화도량도 문제가 있다. 소속 의원 한명이 총 18개 종책집의 중 절반이 넘는 8개를 질의하고서도 회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종책집의를 정쟁(政爭)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입법과 비판·감시는 중앙종회의 중요한 책임이며 의무이다. 이를 방기한다면 종도를 대표한다는 대의기구로서 위와 자긍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음 회기에는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발언대

의현 스님 감형 판결 논란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이 6월 18일 1994년 해종행위자로 지목된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에게 공권징지 3년의 감형 판결을 내렸다. 21년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출세가 단체들이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중 청화 스님의 인터뷰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성명서를 일부 발췌 정리한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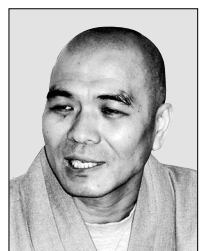
합리적 절차 통해 사면돼야



청화 스님 조계종 전 교육원장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으로서 심리 당일 불가피하게 불참했다. 종단 소임을 맡아 면밀하게 챙겨야 할 사안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종도들에게 매우 죄송하다. 재심호계위원의 판결 소식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다. 한 마디로 축약하자면 재심호계위원의 판결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의현 스님은 재심 청구 사유로 당시 조심호계위원의 징계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이 아니라 당시 재심 청구를 요청했어야 한다. 불교신문에 공고까지 냈던 사안이다.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까지 지낸 분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 재심호계위원이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

사면은 종법 질서 위에서 이뤄져야



퇴휴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지난 6월 18일 열린 제96차 재심호계위원 심판회에서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별빈의 징계를 받았던 서의현 前 총무원장에 대해 공권징지 3년을 확정된 것을 묵도하면서 분노를 넘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이번 재심호계위원의 판결은 의현스님에 대한 사실상의 복권으로 호계위원의 권한을 뛰어 넘어 종헌종법질서를 유린한 직권남용이고, 재심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재심호계위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를 상실하였으며, 앞으로 종단 혼란 조래에 대한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재심호계위원의 판결로 인해 94년 종단개혁 정신은 후퇴하였으며, 조계종단은 94년 종단개혁의 역사를 부정하는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물 연발상담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